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967
----------	-----

발의연월일 : 2009. 12. 23.

발 의 자 : 이은석·성용기·강문기·
박승희·김소림 의원
(찬성자 4인)

□ 제안이유

-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준치,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등·하교 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책 강구, 시민 협조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항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 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영유 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계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 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input type="checkbox"/>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육시설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 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input type="checkbox"/>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0.19>

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제86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육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이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6.6.1] [행정자치부령 제330호, 2006.5.30, 일부개정]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30>

1.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3.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을 말한다.
5. "초등학교등"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등의 장(이하 "초등학교장등"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②제1항에 불구하고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장등의 건의 없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30>
- ③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건의 및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건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6.5.30>
-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6.5.30>

1.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3.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원생수를 말한다) 및 통학로의 체계등

제4조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보호구역을 지정할 초등학교등의 수
2.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안전표지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안전표지·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 특별시·광역시 교육위원회, 시·군 교육청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호기의 보행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6](#)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3호·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임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구역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외에 시행규칙 별표 6의 일련번호 제429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제7조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1. 별표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②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의 설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간선도로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5.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시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3조제4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에 시행규칙 별표 6의 일련번호 제429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제10조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교시간 및 하교시간에 관할보호구역안의 주요 횡단보도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등학교장등에게 교사 또는 학부모등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에는 당해보호구역안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장등은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④초등학교등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안전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해당초등학교등의 주변 교통여건을 검토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5.30>

제12조 (준용규정) 보호구역안에 설치되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교통안전법

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2>

④ 국가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2008-11-05 조례 제 43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장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 안전 전문 교육 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지원) 시장은 교통 봉사 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 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